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과 복지자원 조달방안

2017. 06. 29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CONTENTS

- 01 소요재원과 재원조달 방안
- 02 고소득자,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 03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
- 04 탈루소득 과세 강화
- 05 중산층·서민·자영업자 세제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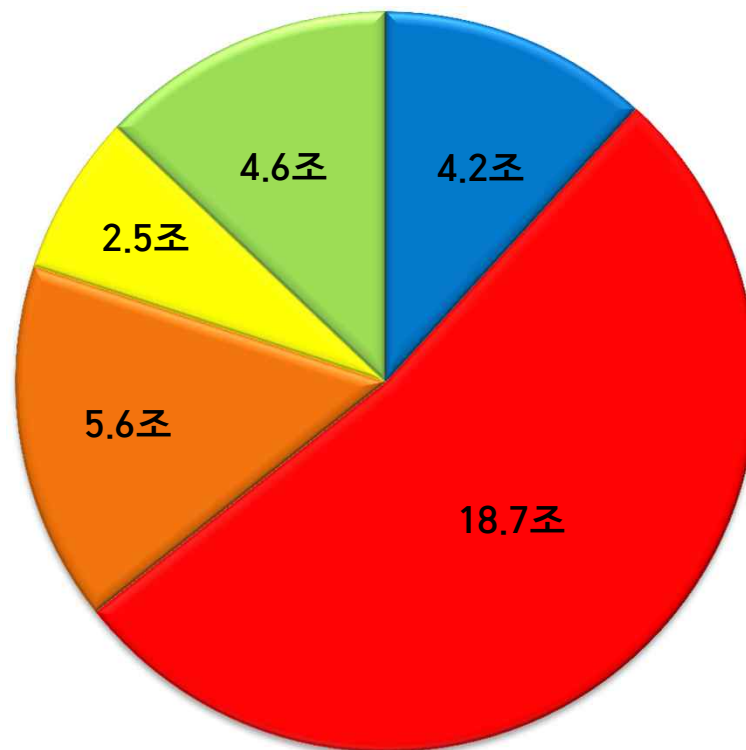


소요자원과 자원조달 방안



소요자원

연평균 35.6조원(5년간 총 178조원)



-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 저출산, 고령화 극복, 주거복지,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 지원
- 교육비 지원
-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 국방, 기타

소요재원

연평균 35.6조원(5년간 총 178조원)

◆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해 범정부적으로 국가일자리 정책을 집중 관리
-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
 - 공무원 17.4만명 / 공공부문 서비스 34만명 / 직접고용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 30만명
- 실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로 민간부문 일자리 50만개 창출
-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으로 일자리 걱정 완화

소요재원

연평균 35.6조원(5년간 총 178조원)

- ◆ 저출산·고령화 극복, 주거복지,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 지원
 - 결혼·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 노후소득보장 강화, 질병으로 인한 노후파산 예방
 - 공적 임대주택 매년 17만호 공급, 청년 임대주택 30만실 공급
 - 도시재생 뉴딜로 노후주택 지원 및 생활여건 개선
 - 생애맞춤형 소득지원 제도
 -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비 문제 해결과 의료 양극화 해소

소요재원

연평균 35.6조원(5년간 총 178조원)

◆ 교육비 지원

-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
- 방과후, 방학중 방치되는 아동과 청소년이 없도록 온종일돌봄학교 운영
- 고교 학점제로 진로맞춤형 교육 추진
- 대입제도를 단순화하고 공정성 확보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교육체제 구축

소요재원

연평균 35.6조원(5년간 총 178조원)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
- 중소기업 창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
-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축소
- 300만 소상공인과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
 -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소요재원

연평균 35.6조원(5년간 총 178조원)

◆ 국방·기타

- 북핵 대응 조기 전력화 및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전환
- 국방개혁 추진과 함께 방위산업을 육성
- 장병들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군 인권 보호를 강화
-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주요 재난으로부터 안전 확보
-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고 소방의 현장 대응능력 선진화
- 신속한 지진정보 제공과 맞춤형 스마트 기상정보서비스를 제공

소요자원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소요자원 비교

- ◆ 복지 예산이 크게 확대되어 5년간 43.2조(연평균 8.64조)의 소요재원이 증가함

소요자원 비교

문재인 정부

5년간 178조(연평균 35.6조)

일자리 창출	21조
산업육성	12.5조
사회복지	93.5조
교육비	28조
국방, 기타	23조

박근혜 정부

5년간 134.8조(연평균 26.96조)

경제부흥	33.9조
국민행복	79.3조
문화융성	6.7조
평화통일	17.6조

재원조달 방안

재정개혁을 통해 5년간 112조원, 세입개혁을 통해 5년간 66조원 조달

▶ 재정·세입개혁 연차별 계획 ◀

(단위: 조원)

구분	합계	'18	'19	'20	'21	'22
1. 재정개혁	112	19.6	21.1	22.5	23.7	25.1
① 재정지출 절감	92	16.2	17.3	18.4	19.5	20.6
② 기금 여유재원	15	2.9	3.0	3.1	3.0	3.0
③ 이차보전 전환	5	0.5	0.8	1.0	1.2	1.5

구분	합계	'18	'19	'20	'21	'22
2. 세입개혁	66	8	15.5	13.7	14.3	14.5
① 세법개정	31.5	1.4	8.7	6.7	7.3	7.4
② 탈루 세금 과세	29.5	5.9	5.9	5.9	5.9	5.9
③ 세외수입 확대	5	0.7	0.9	1.1	1.1	1.2

재원조달 방안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재원조달 방안 비교

- ◆ 박근혜 정부와 비교하여 세입을 5년간 18조원 더 확보하고, 세출을 27.9조원 더 절감하여 재원조달

▶ 재원조달 방안 비교 ◀

문재인 정부

세입확충	66조
세법개정	31.5조
탈루 세금 과세	29.5조
세외수입 확대	5조
세출절감	112조
재정지출 절감	92조
사업성 기금 여유재원	15조
이차보전 전환	5조

박근혜 정부

세입확충	48조
비과세·감면 정비	18조
지하경제양성화	27.2조
금융소득 과세강화	2.9조
세출절감	84.1조

문재인 정부 공약 개요

4대 비전

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

12대 약속

1.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2. 공정한 대한민국
3. 민주·인권 강국 대한민국

4.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5.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6.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7. 출산·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8. 민생·복지·교육 강국 대한민국

9.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10. 안전한 대한민국

11. 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대한민국
12. 문화가 숨쉬는 대한민국

• 경제민주화

1. 갑의 불공정 갑질 근절
2.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3. 소비자 피해구제 정상화
4.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강화
5. 하도급 근로자 임금체불 해결
6. 공정한 근로여건 확보
7.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8.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9. 자본시장 교란행위 처벌 강화
10. 주주권 행사 강화로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11. 조세정의 실현

2 고소득자,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0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가. 소득세 납세인원과 징수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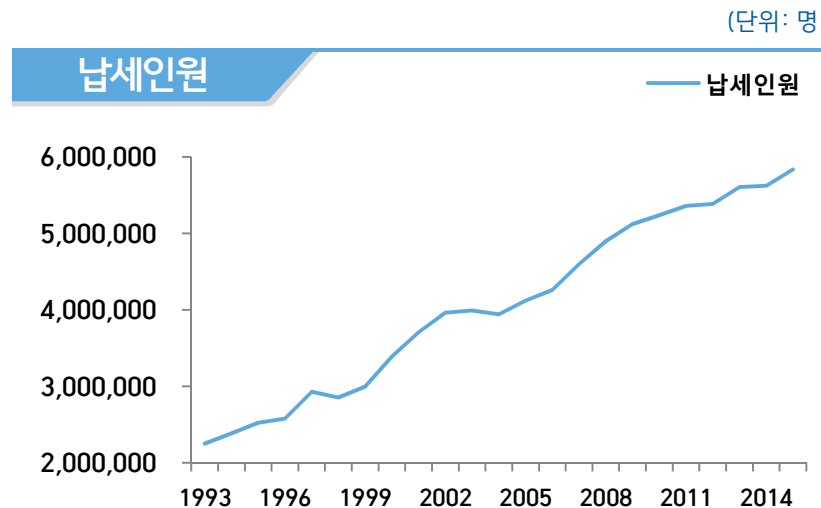
납세인원

- 1993년 3,165,119명이던 납세자는 2015년 6,187,254명으로 1.95배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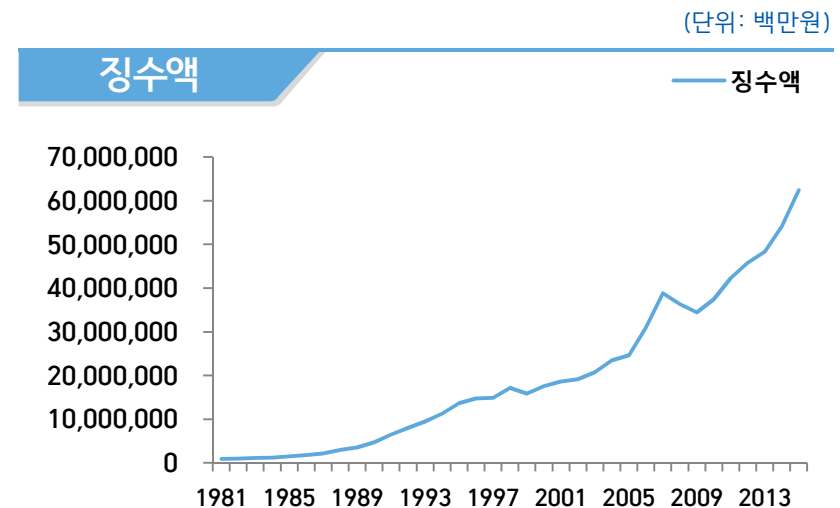
징수액

- 1981년 8,862억이던 소득세 징수액은 2015년 62조로 70배 증가하였음
- 부가가치세를 제치고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큼

▶ 소득세 납세인원과 징수액 추이 ◀



자료 : 국세통계연보



자료 : 국세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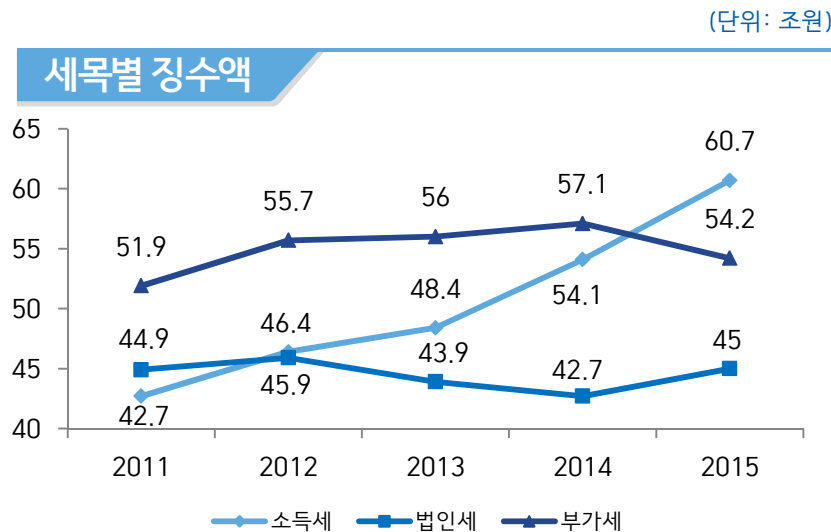
0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나. 소득세의 비중

◆ 2015년 소득세는 60.7조원, 세수에서 27.8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명목임금의 상승, 취업자 수의 증가가 복합적으로 기인하여 소득세 징수액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

▶ 소득세 징수액 추이 ◀



자료 : 국세통계연보

연도별 징수액 순위

연도	1위	2위	3위
1966	소득세	법인세	물품세
1977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1985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1995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2005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2015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자료 : 국세통계연보

0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다. 소득세 세율 연혁

◆ 1995년까지 45%이던 소득세 최고세율은 35%까지 하락하였다가 2017년 40%까지 상승함

▶ 소득세 세율 연혁 ◀

96~2001	2002~04	2005~07	2008	2009	2010	2012	2014	2017
4단계	4단계	4단계	4단계	4단계	4단계	5단계	5단계	6단계
~1,000 10%	~1,000 9%	~1,000 8%	~1,200 8%	~1,200 6%	~1,200 6%	~1,200 6%	~1,200 6%	~1,200 6%
1,000~4,000 20%	1,000~4,000 18%	1,000~4,000 17%	1,200~4,600 17%	1,200~4,600 16%	1,200~4,600 15%	1,200~4,600 15%	1,200~4,600 15%	1,200~4,600 15%
4,000~8,000 30%	4,000~8,000 27%	4,000~8,000 26%	4,600~8,800 26%	4,600~8,800 25%	4,600~8,800 24%	4,600~8,800 24%	4,600~8,800 24%	4,600~8,800 24%
8,000~ 40%	8,000~ 36%	8,000~ 35%	8,800~ 35%	8,800~ 35%	8,800~ 35%	8,800~30,000 35%	8,800~15,000 35%	8,800~15,000 35%
						30,000~ 38%	15,000~ 38%	15,000~50,000 38%
								50,000~ 40%

0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라.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5억에서 3억으로 하향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상향
 - 전체 근로자의 0.1%인 19,683명, 종합소득자의 0.7%인 44,860명이 해당됨

▶ 현재와 인상 후 소득세율 ◀

현재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5억원 초과	40%

인상 후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42%

02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축소

가.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현황

- ◆ 2015년에 4,830억의 신고세액 공제가 이루어졌는데, 상속이나 증여재산 규모가 큰 자산가들에게 더 많은 공제가 이루어짐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액

(단위: 백만원)

	상속세	증여세
2011년	147,852	174,987
2012년	184,969	179,320
2013년	170,741	178,588
2014년	178,865	208,873
2015년	234,529	248,531

자료 : 국세통계연보

상속·증여재산 규모별
(2015년)

(단위: 백만원)

상속재산 규모	공제액	증여재산 규모	공제액
1억 이하	1	0.1억 이하	497
1억 ~ 3억	28	0.1억 ~ 0.5억	2,593
3억 ~ 5억	90	0.5억 ~ 1억	8,674
5억 ~ 10억	2,436	1억 ~ 3억	31,054
10억 ~ 20억	15,678	3억 ~ 5억	23,330
20억 ~ 30억	19,163	5억 ~ 10억	38,413
30억 ~ 50억	28,334	10억 ~ 20억	31,867
50억 ~ 100억	34,115	20억 ~ 30억	18,226
100억 ~ 500억	72,324	30억 ~ 50억	15,188
500억 초과	62,360	50억 초과	78,689

자료 : 국세통계연보

02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축소

나.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축소

◆ 상속세와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던 비율을 축소함

요건

- 상속세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 증여세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2016년 이전

- 상속세와 증여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함

공제율 개정

공제율을 10%에서 7%로 축소

2017년

- 상속세와 증여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7을 공제함

공제 축소

공제율을 7%에서 3%로 축소

축소 후

- 상속세와 증여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을 공제함

03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가.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 현황

◆ 2015년에 22,239건의 주식 양도가 발생하였고 양도차익은 7,919억이었음

- 양도가액 규모가 커질수록 건수는 적어지지만 건당 양도차익이 크게 상승함

양도가액 규모별
(2015년)

(단위: 건, 백만원)

양도가액 규모	자산건수	양도차익
0.5억 이하	11,717	44,540
0.5억 ~ 1억	3,532	41,509
1억 ~ 2억	2,837	55,395
2억 ~ 3억	1,265	43,539
3억 ~ 5억	1,117	52,597
5억 ~ 10억	908	75,927
10억 ~ 20억	501	110,604
20억 ~ 30억	148	73,265
30억 ~ 50억	99	73,342
50억 ~ 100억	68	70,436
100억 초과	47	150,770

적용 세율별
(2015년)

(단위: 건, 백만원)

비상장주식	자산건수	양도차익
중소기업(10%)	1,489	197,956
비중소기업(20%)	20,260	494,351
비중소기업(30%)	3	522

상장주식	자산건수	양도차익
중소기업(10%)	189	58,318
비중소기업(20%)	216	32,170
비중소기업(30%)	82	8,607

03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나.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 방법 및 과세 강화

- ◆ 현재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장외 거래 주식, 비상장 주식에만 부과됨
 -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

▶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세 ◀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세율
거주자	개인	대주주*	중소기업 주식		20
			그 외 주식	1년 이상 보유	20
				1년 미만 보유	30
		소액주주	상장주식 장내거래		비과세
			비상장주식 및 상장주식 장외거래	중소기업주식	10
				그 외 주식	20
	법인		모든 주식		법인세

* 대주주 요건

(유가증권시장)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지분율 2% 또는 시가총액 20억원 이상
(코넥스시장)	지분율 4%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04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인하

가. 금융소득 과세 연혁

- ◆ 96년 시행 후 IMF 금융위기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유보함
- ◆ 13년 이후 기준금액이 2천만원으로 낮아짐
- ◆ 02년 부부합산과세가 위험판결을 받아 부부별산과세함

▶ 금융소득 과세 연혁 ◀

연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8	9~11	'12	'13	'17
종합과세		시행		유보			시행								
세 율	기본	10~40%					9~36%			8~35	6~35	6~38%		6~40	
	원천	15%		22%		20%	15%			14%					
기준금액		4천만원		유보			4천만원						2천만원		
합산여부		부부합산과세						부부별산과세							

04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인하

나. 금융소득 과세 현황

- ◆ 2015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인원은 11만 1천명이고,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은 13조 7천억원임
- ◆ 13년부터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천만원으로 낮아진 이후 종합과세되는 인원이 크게 증가함

과세 현황

(단위: 천명, 천억원)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인원	51.2	55.7	137.6	113.1	111.0
금액	102.1	106.5	125.8	115.0	136.5

금융소득 규모별 (2015년)

(단위: 명, 백만원)

금융소득 규모	신고인원	금융소득
0.2억 이하	1,316	4,529
0.2억 ~ 0.3억	40,925	981,818
0.3억 ~ 0.4억	18,075	622,385
0.4억 ~ 0.6억	17,172	833,880
0.6억 ~ 0.8억	9,108	627,727
0.8억 ~ 0.88억	2,483	208,470
0.88억 ~ 1억	2,461	231,070
1억 ~ 2억	9,890	1,361,213
2억 ~ 3억	3,315	806,142
3억 ~ 5억	2,626	1,003,866
5억 초과	3,676	6,972,823

04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인하

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인하

-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일정 금액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 과세함
 - 종합과세 되지 않는 경우 종합과세세율(6~40%)이 아닌 원천징수세율(14%)로 분리과세 됨

▶ 금융소득 종합과세 ◀

기준금액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

기준금액
인하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

인하 후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 1천만원 이하

3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



01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가. 법인세 최저한세율 연혁

- ◆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과 과표 100억 이하의 일반기업의 최저한세율은 낮아지고 과표가 100억을 초과하는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높아지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옴
 - 일반 법인세율과 비교하였을 때, 최저세율은 3%, 최고세율은 5% 차이가 있음

▶ 법인세 최저한세율 연혁 ◀

연도		'05	'08	'09	'10	'13	'14
중소기업		10%	8%	8%	7%	7%	7%
일반 기업	100억 이하	13%	13%	11%	10%	10%	10%
	100~1,000억				11%	12%	12%
	1,000억 초과	15%	15%	14%	14%	16%	17%
일반 법인세율		13~25%	11~25%	11~22%	10~22%	10~22%	10~22%

01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나. 최저한세율 적용 현황

- ◆ 최저한세 적용 기업은 중소기업 9,929개(전체 중소기업의 2.07%), 일반법인 735개(전체 일반법인의 0.65%)로 1,000억을 초과하여 17%의 최저한세율을 적용 받는 일반법인은 10개임

최저한세 적용 기업

(단위: 개)

구분	중소기업	일반법인
2011	11,513	837
2012	8,657	507
2013	10,673	745
2014	10,577	760
2015	9,929 (2.07%)	735 (0.65%)

* ()안은 총 신고법인 대비 비율

자료 : 국세통계연보

과세표준 규모별
(2015년)

(단위: 개)

과세표준 규모	중소기업	일반법인
1억 이하	5,630	209
1억 ~ 2억	2,195	91
2억 ~ 5억	1,557	97
5억 ~ 10억	334	61
10억 ~ 20억	134	72
20억 ~ 50억	58	75
50억 ~ 100억	17	58
100억 ~ 200억	3	30
200억 ~ 500억	1	22
500억 ~ 1,000억	-	10
1,000억 ~ 5,000억	-	6
5,000억 초과	-	4

자료 : 국세통계연보

01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나.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 ◆ 최저한세란 과세부담의 형평성과 조세수입을 위해 아무리 많은 공제나 감면을 받아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로, 공제나 감면 후의 법인세와 최저한세를 적용한 법인세 중 더 큰 금액을 부담함
 - 과세표준 1천억 이상의 초고소득 법인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을 인상하여 **실효세율을 인상함**

▶ 현재와 인상 후 최저한세율 ◀

구분	과세표준	현재	인상 후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7%	7%
일반기업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8%	8%
	유예기간 이후 4~5년차	9%	9%
	100억원 이하	10%	10%
	1천억 이하	12%	12%
	1천억 초과	17%	19%

02 법인세 최고세율 원상복귀

가. 법인세 납세 법인 수와 징수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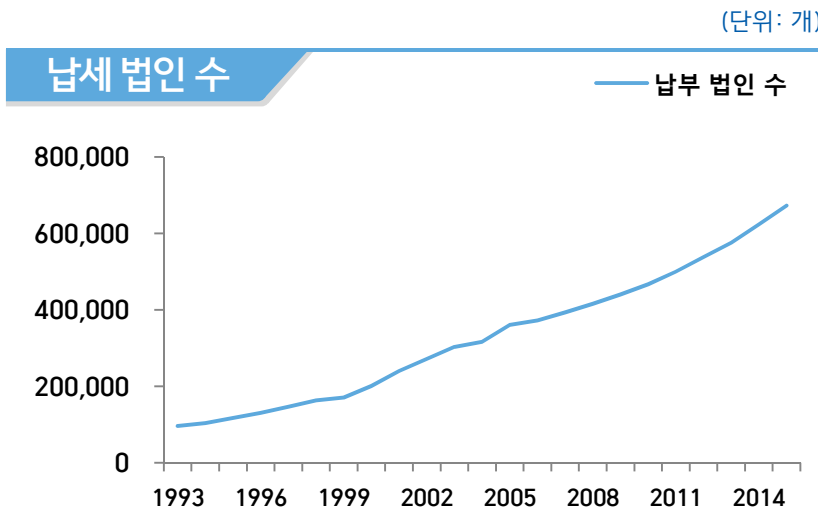
납세 법인 수

- 1993년 96,629개이던 법인세 납세 법인은 **2015년 673,374개로 7배 가량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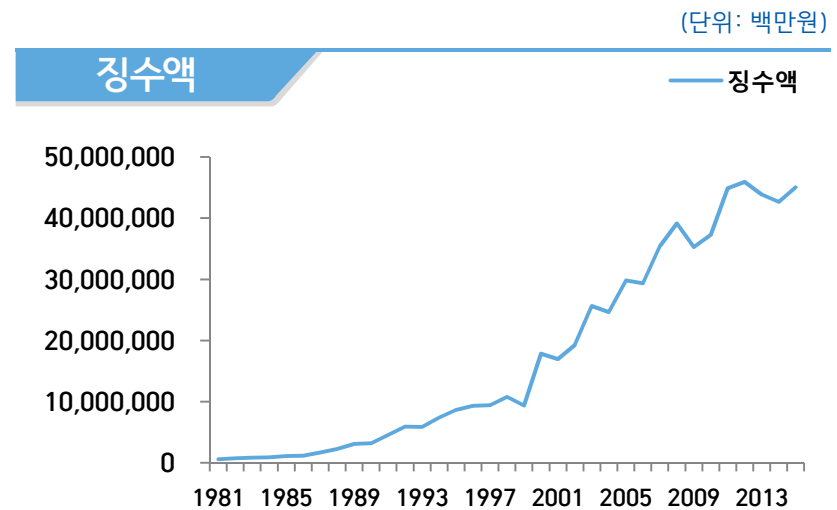
징수액

- 1981년 5,940억이던 법인세 징수액은 **2015년 45조로 76배 증가**하였음
- 소득세와 부가세에 이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번째로 큼

▶ 법인세 납세 법인 수와 징수액 추이 ◀



자료 : 국세통계연보



자료 : 국세통계연보

02 법인세 최고세율 원상복귀

나. 법인세율 추이

◆ 1994년 이후로 정부가 바뀔 때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속적으로 인하됨

● 문민정부(34%→28%), DJ정부(28%→27%), 참여정부(27%→25%), MB정부(25%→22%)

▶ 법인세율 추이 ◀

과표	6공	문민정부				DJ정부	참여정부	MB정부			
	'94	'95	'96	'97~'02	'03~'05	'06~'08		'09	'10	'11~'12	'13~
~1억	20%	18%	18%	16%	15%	13%		11%	11%	10%	10%
1~2억											
2~200억	34%	32%	30%	28%	27%	25%		25%	22%	22%	20%
200억~											22%

02 법인세 최고세율 원상복귀

다. 실효세율 추이

◆ 법인세 실효세율의 추이를 보면 비과세·감면이 축소되면서 전반적으로 실효세율이 상승함

- 외국납부세액이 공제된 이유도 있지만, 대기업 중에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평균보다도 낮은 실효세율을 부담하고 있음

▶ 법인세 실효세율 추이 ◀

(단위: %)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전체기업	16.6	16.6	16.8	16.0	16.0	16.1	16.6
대기업	17.7	17.6	17.8	17.1	17.3	17.3	18.0
상호출자제한기업	16.0	16.3	16.2	15.8	16.2	16.0	17.1
중견기업					16.5	17.0	17.5
중소기업	13.1	13.2	13.3	12.3	12.5	12.6	12.7

02 법인세 최고세율 원상복귀

라.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 ◆ 과세표준 200억 초과하는 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2%에서 25%로 상향
 - MB정부 이전 수준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여 고소득 법인의 실질적인 세부담 강화

▶ 현재와 인상 후 법인세율 ◀

과세표준	현재	인상 후
2억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 초과 200억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200억 초과	과세표준의 100분의 22	과세표준의 100분의 25

03 비과세·감면 축소

가. 국세감면 추이

◆ 감면액은 14년 34.3조원(14.3%), 15년 35.6조원(14.2%), 16년 35.3조원(13.7%) 규모임

- 지속적으로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며 비중을 줄여가고 있음
- 15년은 근로장려금의 확대 도입으로 인하여 증가, 16년은 대기업의 공제 축소로 인해 감소함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2014년(실적)	2015년(추정)	2016년(추정)
국세감면액(A)	343,383	356,656	353,325
국세수입총액(B)	2,055,198	2,157,346	2,231,383
국세감면율[A/(A+B)]	14.3%	14.2%	13.7%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14.8%	14.7%	14.8%

자료 : 조세지출예산서

03 비과세·감면 축소

나.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

◆ 개인에 대한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가 34%**,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중 **대기업이 38%**를 차지함

● 09년 이후로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며 비중을 줄여가고 있음

(단위: 억원, %)

구 분		2014년 (실적)		2015년 (추정)		2016년 (추정)	
			비중		비중		비중
개인	중·저소득자	149,586	64.5	166,294	66.0	165,622	66.0
	고소득자	82,214	35.5	85,844	34.0	85,489	34.0
	계	231,800	100	252,138	100	251,112	100
기업	중소기업	57,661	55.3	55,655	56.1	57,326	59.3
	중견기업	2,607	2.5	2,606	2.6	2,535	2.6
	상호출자제한	27,318	26.2	26,024	26.2	23,278	24.1
	기타기업	16,707	16.0	15,017	15.1	13,512	14.0
	계	104,293	100	99,302	100	96,651	100
구분곤란		7,290	-	5,216	-	5,562	-
총계		343,383		356,656		353,325	

자료 : 조세지출예산서

03 비과세·감면 축소

다.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정비 연혁

◆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비과세·감면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음

- 2014년 개정내용이 2016년 시행되면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2015년 8,938억에서 2016년 4,415억으로 4,523억원 감소함

2014년 개정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기업 기본공제 폐지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기업 당기분 기본공제율 인하 (3~4% → 2~3%)

2015년 개정

-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조정
-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100% → 80%)

2016년 개정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기업 공제율 인하
(당기분: 2~3% → 1~3%, 증가분 : 40% → 30%)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조정(3/5/7% → 1/3/6%)

03 비과세·감면 축소

라. 경제적 효과성이 떨어지는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 축소

◆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취약계층 지원 분야는 효율성을 제고

- 연구·인력개발비 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축소 및 정비
- 연구인력개발비 투자세액공제는 조세지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세액공제 별 공제액 추이 ◀

(단위: 억원)

구분	2014년(실적)	2015년(추정)	2016년(추정)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7,860 (8.11%)	28,188 (7.90%)	28,499 (8.07%)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11,349 (3.31%)	8,938 (2.51%)	4,415 (1.25%)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3,782 (1.10%)	3,928 (1.10%)	3,415 (0.97%)

* ()안은 총 조세지출액 대비 비율

**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는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합

자료 : 조세지출예산서

03 비과세·감면 축소

◆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취약계층 지원 분야는 효율성을 제고

-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촉진 목적

▶ 연구·인력개발비 투자세액공제 ◀

대상

- 연구개발비 : 인건비(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재료비 등
- 인력개발비 : 위탁교육훈련비(연구전담요원 등)

공제율

- 당기 발생분 : 연구·인력개발비 지출액 $\times$ 1~3%(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25%)
- 전기 초과분 : 연구·인력개발비 초과액 $\times$ 30%(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

기본공제 폐지

현재 : 기본공제 1% +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 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times$ ½ (한도 3%)
개정 :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 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times$ ½ (한도 3%)

폐지 후

- 당기 발생분 : **연구·인력개발비 지출액 $\times$ 0~3%**(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25%)
- 전기 초과분 : 연구·인력개발비 초과액 $\times$ 30%(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

03 비과세·감면 축소

◆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취약계층 지원 분야는 효율성을 제고

- 고용과 연계된 투자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제고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대상

- 감면업종 : 소비성서비스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 적격사업용 자산 : 내국인이 새로 취득한 업종별 사업용 자산과 공통 사업용 자산

공제율

- 기본공제율 : 수도권(일반0%, 중견1%, 중소3%), 수도권밖(일반0%, 중견2%, 중소3%)
- 추가공제율 : 수도권(일반3%, 중견5%, 중소6%), 수도권밖(일반4%, 중견6%, 중소7%)

2017년 일몰
종료 후 폐지

폐지 후

폐지 후 투자세액공제 제도, 고용지원세제와 연계하여 재설계

03 비과세·감면 축소

◆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취약계층 지원 분야는 효율성을 제고

- 생산성 향상, 안전 관리 강화, 산업 경쟁력 강화의 목적

▶ 특정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대상

- 생산성 향상시설,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

공제율

- 투자금액 ×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10%)

공제율
하향 조정

공제율을 전반적으로 1~4% 하향 조정함

인하 후

- 투자금액 ×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6%)

4 탈루소득 과세 강화



01 부가세 징수 방식 개선

가. 부가가치세 납세인원과 징수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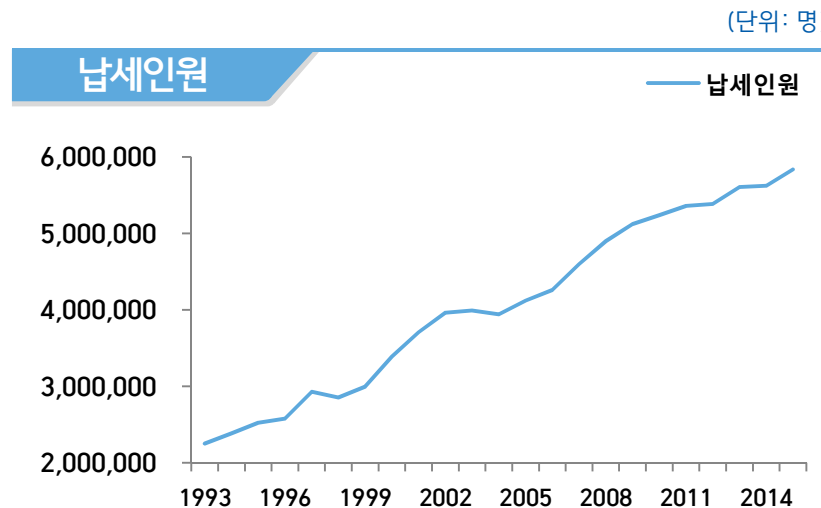
납세인원

- 1993년 2,253,105명이던 납세자는 **2015년 5,837,775명으로 2.6배 증가**하였음
- 연평균 4.4%씩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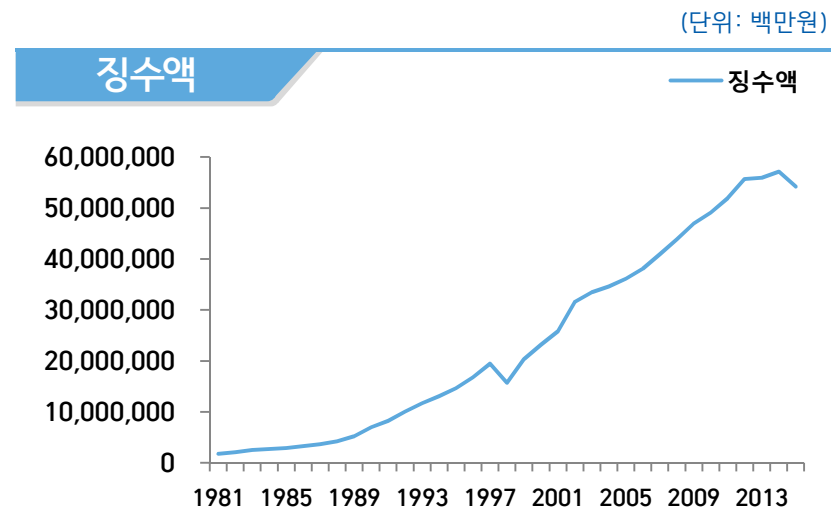
징수액

- 1981년 1.8조이던 부가가치세 징수액은 **2015년 54조로 30배 증가**하였음
- 연평균 10.5%씩 큰 폭으로 증가해왔음

▶ 부가가치세 납세인원과 징수액 추이 ◀



자료 : 국세통계연보



자료 : 국세통계연보

01 부가세 징수 방식 개선

나. VAT GAP

◆ 이론적 부가가치세 징수총액과 실제 징수금액과의 차이

- 조세범칙, 체납, 탈세·지하경제·조세회피·오류·법해석 차이 등으로 구성됨

2011년 한국의 VAT GAP

(단위 : 억원)

구분	2011년 기준
이론적 부가가치세 징수액	631,471
(-) 실제 부가가치세 징수액	(-) 519,069
VAT GAP	112,402 (17.8%)
• 결손, 체납액	34,179
• 부가가치세 탈루 등 조세회피	78,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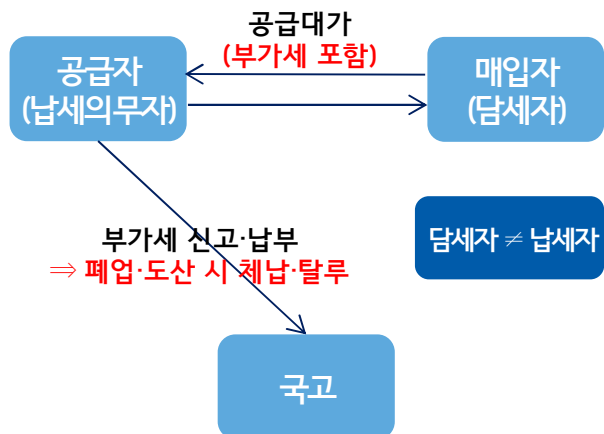
01 부가세 징수 방식 개선

다. 매입자 납부제도(Reverse Char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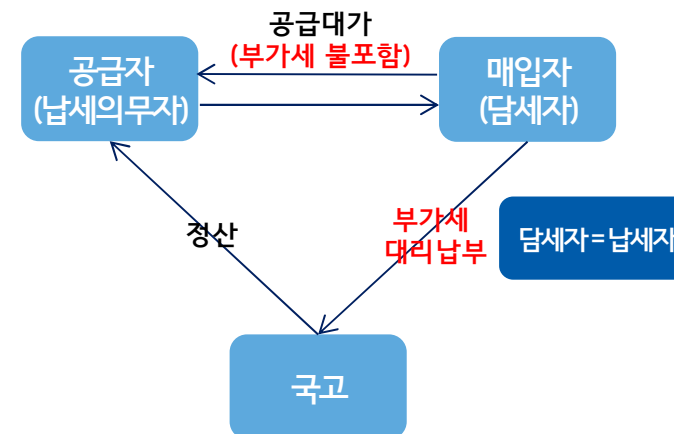
- ◆ 부가가치세 징수 의무를 공급자가 아닌 매입자에게 부여하여 매입자가 직접 납부하도록 함
 - 한국에서는 금, 동, 철 스크랩에 매입자 납부제도가 도입되어 있음

▶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매입자 납부제도 ◀

기본(간접세)



매입자 납부제도



01 부가세 징수 방식 개선

라.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한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 ◆ 부가가치세 징수 의무를 공급자가 아닌 여신전문금융사에 부여하여 체납과 탈루를 최소화
 - 여신전문금융사는 매입자로부터 공급대가(부가세 포함)를 수령하여 국세청에 부가세를 대리 납부한 뒤, 가맹점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함
 - 민간 소비에서 신용카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55%로 B2C 거래에서 부가세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체납과 탈루를 방지할 수 있음
- ◆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해서 신용카드사에 의한 매입자 납부제도가 도입되면 **세수증대효과, 징세비용 절감, 부당환급 방지**의 효과가 기대됨

02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기준금액 하향

- ◆ 해외에 은닉된 금융재산을 탈세하지 못하도록 만든 제도로,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함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

신고 기준

-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을 초과한 경우

신고기준강화

신고기준을 10억에서 1억으로 강화

기준 강화 후

-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억을 초과한 경우

위반 시 제재

- (과태료) 미(과소)신고 금액의 20% 이하, 미(거짓)소명 금액의 20% 이하
- (명단공개)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초과 시 인적사항 공개
- (형사처벌)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초과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금액의 20% 이하 벌금

03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

- ◆ 2015년 체납액은 3조 7,832억으로 1인 평균 17억이며, 개인 최고액은 276억, 법인 최고액 490억임

▶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정보공개 ◀

대상자

-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

* ('04) 2년 경과 10억원 이상 → ('10) 2년 경과 7억원 이상 → ('12) 1년 경과 5억원 이상

공개항목

-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

▶ 상습·고액체납자 신규 명단공개 현황 ◀

(단위: 명, 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명단공개	인원	1,313	7,213	2,598	2,398	2,226
	체납액	32,774	110,777	47,913	41,854	37,832
납부금액		577	723	899	1,178	1,026

5 중산층·서민·자영업자 세제지원 확대



01 근로장려금 수급기준 및 지급금액 상향

가. 근로장려금 소개

근로장려금

- 사회보험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
- 가구 구성원과 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해서
- 근로유인을 제공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지급요건

- **(가구요건)** ① 배우자가 있거나 ②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③ 신청자가 만 40세 이상
- **(총소득요건)**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

지급금액



자료 : 국세청홈택스

01 근로장려금 수급기준 및 지급금액 상향

나.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현황

▶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현황 ◀

신청·지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신청가구	지급가구	지급액
2008	723,937	590,720	453,731
2009	676,634	566,080	436,903
2010	666,816	522,098	402,003
2011	930,232	752,049	614,021
2012	1,020,087	783,397	561,761
2013	1,060,405	846,018	774,492
2014	1,658,659	1,281,856	1,056,562
2015	1,695,491	1,378,953	1,028,049

가구유형별·근로형태별
(2015년)

(단위: 백만원)

가구유형	가구수	금액
단독가구	417,984	155,144
홀벌이 가구	828,590	741,254
맞벌이 가구	132,379	131,651

(단위: 백만원)

근로형태	가구수	금액
상용	395,382	315,821
일용	402,028	240,717
상용+일용	103,170	89,358
사업	453,925	362,646
기타	24,448	19,507

01 근로장려금 수급기준 및 지급금액 상향

다. 근로장려금 수급기준 및 지급금액 상향

◆ 근로장려금의 수급기준과 지급금액을 상향하여 소득불평등을 해결하고 저소득층을 지원

▶ 근로장려금 수급기준 및 지급금액 상향 ◀

지급 조건	현재	인상 후
재산기준	1억 4천만원	2억
소득요건	- (단독가구) 1,300만원 - (홀벌이가구) 2,100만원 - (맞벌이가구) 2,500만원	- (단독가구) 1,700만원 - (홀벌이가구) 2,500만원 - (맞벌이가구) 3,000만원
지급금액	가구와 소득금액별 지급	지역화폐 50만원 추가지급

02 중산층·서민 주거 비용 세제 지원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 및 한도 상향

◆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비용 지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자 범위와 한도를 확대함**

▶ 월세 세액공제 ◀

요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m², 25.75평) 이하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을 것

공제율

- 월세 지급액의 100분의 10

지원 요건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공제한도

- 월세액 750만원

공제 확대

총급여액 기준을 8천만원으로 상향, 월세한도를 900만원으로 인상

확대 후

- 지원요건 :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공제한도 : 월세액 900만원

감사합니다

